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9. 24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9.03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4.9.10.
다. 상정일자 :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4.9.24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종 웅 청소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고, 전문신고인의 의도적인 1회용품 위반사례 유발 등 포상금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('08.5.13.)되었으며,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함

나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를 폐지함

3. **검토보고**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고,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(2008.5.13.) 되었으며,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